#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8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조인철·황정아·이건태

장종태 • 이재관 • 박용갑

한정애 • 박지혜 • 김현정

오세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스토킹행위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는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스토킹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 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 까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 나. 법원이 잠정조치 집행자에게 잠정조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 법률 제 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두 차례"를 "세 차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잠정조치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 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실태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전에 결정한 잠정조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생 략)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 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 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 2호 ·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 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 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잠정조치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 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잠정조치를 받은 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사람은 <u>3년</u> 이하 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u>5</u> 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
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u>5년</u>
<u>5천만원</u>
②
<u>7</u>
<u>년7천만원</u>